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정이유

-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의 효율적인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 들소리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
 - 들소리 전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이용대상 및 개관, 휴관(안 제4조, 안 제5조)
 - 들소리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자, 각종 공연·연구·발표자 등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
- 사용허가 및 운영의 위탁(안 제6조, 안 제9조~제16조)
 -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
 -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하기 위해 들소리 기능보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운영위원회(안 제17조 ~ 제21조)

- 위원수 및 임기 : 위원 11인 이내, 임기 2년 이내 — 연임가능
 - 당연직 : 위원장 부시장(당연직), 정책기획실장
 - 위촉직 : 의회의원(2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 보존회 활동 지원(안 제22조)

-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
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73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 (이하 “들소리” 라 한다)의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들소리 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수관은 구미시 지산동 10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들소리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
3. 들소리의 선양 및 홍보
4. 전수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5. 전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전수관은 들소리의 전승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교육자 및 각종 공연·연구·발표자 등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2.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② 제1항 제2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용 및 위탁관리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들소리 기능 보유자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시설 및 부속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들소리 기능보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들소리 보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8조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전수관 운영에 대한 관련성,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또는 전대금지)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전수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운영위원회

제17조(목적 및 명칭) ①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전수관 운영 주관 국장(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9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1조(기능) 위원회는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 운영사항 평가 및 들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장 보존회 활동 지원

제22조(보존회 활동 지원) 들소리의 전승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전수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illegible]

관 련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비부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